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작성자 : 윤효식(승실대학교)

세션명	워크숍5.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일시	2018.7.5.(목) 13:30~15:00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3 (9F)
참석자	사회	김보라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제
	패널	김기창(고려대학교)	김혜숙(방송통신위원회)
		차재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플로어	김중배(서울디지털대학교)		
플로어	약 20명 참여		

제안내용	<p>2012년 8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나 게임 섯다운제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 혹은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기인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p> <p>이러한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반 중의 하나는 국내에 ‘본인확인기관지정’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통해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의 특성 상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p> <p>이 워크숍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토론했고자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존립 필요성은 무엇인가 -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야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필요할 경우 어떠한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가 - 본인확인 시스템의 구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요약내용	<p>본인확인기관제도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와 본인확인기관으로 정부가 지정함으로써 진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토론했었다. 우선 김중배 교수가 국내 본인확인기관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와 해외의 본인확인 시스템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김기창 교수는 한국의 본인확인제도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자일 뿐이라며 비판하였다. 또한 정부가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여 진입규제를 두는 것은 본인확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미루 활동가는 본인확인기관이 공통적인 CI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정보가 축적되고, 이는 이용자 감시에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p> <p>방송통신위원회 김혜숙 사무관은 법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방식으로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진입규제를 두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하였다. 차</p>

	<p>재필 정책실장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최근 본인확인기관의 문호가 넓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진입규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안이나 본인확인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본인확인 서비스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였다.</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논의 세부 내용</p>	<p>김보라미 변호사(사회자): 금융사 해킹 사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토론을 해보았으면 좋겠다.</p> <p>김종배 교수: 본인확인정보는 해당사람의 신원을 식별하고 인증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식별 및 비밀정보이다.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정보를 부여하면, 이용자는 망사업자에게 이를 통해 인증을 하고 망사업자는 그 정보를 가지고 본인확인기관에게 확인을 한다. 본인확인 기관은 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들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CI라고 하는 것은 연계정보인데, 이것이 유일키가 된다.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해외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p> <p>김기창 교수: 용어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다. 이런 혼란 때문에 불합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본인확인이라는 용어가 법전에도 사용되는데, 진실한 당사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술인지, 아니면 본인을 표시하는 정보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특정 개인을 다른 개인과 식별(identify)하기 위한 정보이다. 신원을 중복되지 않게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이 전달하는 정보가 진실된 것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버렸다. 하지만, 그렇게 확인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뿐, 지금 정보를 주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를 확인해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정부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서 본인확인 사업에 진입규제를 두는 것도 문제다. 보안이 필요한 분야일수록 정부가 규제하면 안 된다. 오히려 보안기술의 발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본인 확인 기술 개발을 방통위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확인 은 각각의 사업자가 알아서 하면 된다.</p> <p>이미루 활동가: 업체에서 본인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면, 업체 스스로 필요한 본인확인 방법을 도입하면 된다. 정부 지정으로 몇 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정부가 지정하는 본인확인제도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문제는 본인확인정보가 몇 개의 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공통적인 CI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어떠한 사이트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축적된다. 이를 통해 개인을 감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p> <p>김혜숙 사무관: 성인인증이나 실명확인 등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령들이 있다.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확인 기관은 예외적으로</p>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를 일방향 암호화 한 후(복호화가 불가능하도록)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다. 아무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하지 않는 본인확인 서비스라면 어떠한 규제도 없다. 다른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진입규제를 두었다는 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김기창 교수: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본인확인을 하라는 법적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거래 관련해서 금융실명법 자체가 실명명의로라는 것을 법전에 사용하면서 실명 확인을 주민등록번호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없다. 방통위가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입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확인에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업체들이 알아서 본인 확인 방법을 개발할 것이고 그것이 좋으면 수출할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인확인 방법을 법에서 규정해놓고 진입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김보라미 (사회자): 진입규제나 본인확인 문제에 대해서 기업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차재필 정책실장: 기업들은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원가입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이곳을 통해 본인확인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보통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최근 본인확인기관의 문호가 넓어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진입규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 기업들이 다시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 근본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김혜숙 사무관: 현재 개별적인 법령에서 본인확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 것도 제시해주지 않고 법령을 준수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등 여러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중배 교수: 어느 나라에서도 망을 통한 비대면 관계에서 진짜 본인인지 아닌지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이를 전제하면 온라인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다만 어느 정도 정보가 일치하면 본인확인이 된 것으로 인정해주자고 약속을 하는 것이다.

김기창 교수: 정부가 본인확인기술에 대해 지금까지 취해온 입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직접 하든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든, 본인확인기술이 무엇이고 이를 활용한 사업 잠재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을 해 온 부담으로 아직까지 허덕이고 있는 거 같다. 보안의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들의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사업자들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방통위가 온라인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못하게 하면 된다.

(플로어의견) 정부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 라는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로 들린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다양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본인 확인 기술의

발전을 정부가 막는 거 같다. 애초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성인인증 등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는 상상력들을 사업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정부가 막고 있는 것 같다.

(플로어의견) 주민등록번호 외의 본인확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진입규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허용하냐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다양한 본인확인 방식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방식은 금지시킬 수 있지 않나.